

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선고 2018나2015527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69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선고 2018나2015527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조용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송석규

변론 종결2018. 7. 10.

판결 선고2018. 8. 14.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4134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8,966,795원 및 그 중 101,097,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1.부터, 307,869,795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각 2018. 8. 14.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8,966,795원 및 그 중 101,097,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2.부터, 307,869,795원에 대하여는 2015. 12.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869,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0,495,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각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0. 30.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아, 2014. 2.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하수관거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9억 6,450만 원, 공사기간 2014. 2. 3.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2억 9,645만 원(계약금액의 10%)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제1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4. 5. 30. C에 원고가 시행하는 'E 오피스텔 공사' 중 토공사(이하 '제2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0억 8,550만 원,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6. 6. 3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3억 855만 원(계약금액의 10%)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제2도급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및 이에 편입된 각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와 특수조건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실시하였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C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C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C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F조합, B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⑥ C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C이 현금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⑦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C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C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C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고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C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C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C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C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8.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때

⑤ 원고 또는 C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C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특수조건

제6조(원고의 계약해제, 해지)

C이 공사시행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원고는 사전고지를 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C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파산의 신청을 받아 공사를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공사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제7조(위약금)

원고와 C은 각각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액(vat 포함)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각 보증계약 체결

1) C은 2014. 2. 13. 피고와 보증금액 2억 9,645만 원, 보증기간 2014. 2. 3.부터 2015.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C이 제1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등을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C은 2014. 7. 31. 피고와 보증금액 3억 855만 원, 보증기간 2014. 5. 30.부터 2016. 6. 30.까지로 각 정하여 C이 제2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등을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공통적으로 편입된 약관(이하 '보증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② 피고는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 또는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장기계속공사의 보증책임)

① 보증채권자와 발주가가 체결한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보증채권자가 연차별 계약을 이행·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피고는 제1항에 의거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증범위)

①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제7조(보증금의 지급기한)

① 피고는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제9조(협조 및 통보사항)

②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 및 채무자는 바로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보증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여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면책조항)

①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도급계약 해지통보

1) C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C에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공사 지연이 계속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4. 10. 29. C에 ① '채불금액 누적,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미갱신 및 채권압류, 일방적인 공사 중단(2014. 10. 3. ~ 현재) 등으로 인하여 제1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특수조건 제6조에 의하여 제1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② '채불금액 누적,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정지연과 중지 등으로 제2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2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특수조건 제6조에 의하여 제2도급계약을 각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각 하였고, 위 각 통보는 그 무렵 C에 도달하였다. 이후 C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 및 피고의 지급거절

1) 이 사건 각 도급계약 해지 후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9. 21.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② 2015. 12. 1.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1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6. 3. 14. 원고에게 '제1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195,353,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제1보증계약의 보증금액 중 195,353,000원만을 지급하였고, ② 제2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6. 2. 16. C에 'C은 제2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 지연 및 채권가압류 등의 사정으로 공사의 계속 진행이 어려움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제2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내지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거 제2보증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016. 2. 19. 원고에게 '위와 같이 C에 제2보증계약 취소 통지를 하였고, 제2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채권가압류 결정 및 송달 상황

1) 주식회사 G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2291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11,914,650원으로 하여 'C이 제2도급계약 등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은 2014. 7. 15. 발령되어 제2보증계약 체결 전인 2014. 7. 18. 원고에게, 제2보증계약 체결 당일인 2014. 7. 31. C에 각 송달되었다.

2) 주식회사 J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2371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136,344,370원으로 하여 'C이 제2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구별하여 '후행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은 제2보증계약 체결 후인 2014. 10. 15. 발령되어 2014. 10. 20. 원고에게, 2014. 11. 10. C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 16, 17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제1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4. 10. 29.경 제1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제1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보증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증금의 액수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약관 제6조 제1항은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C과 제1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5억 9,290만 원으로 정산한 점, ② 원고는 제1도급계약 해지 이후인 2014. 12. 23.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 제1공사의 잔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7억 9,400만 원,
공사기간 2014. 12. 23.부터 2015.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
도급계약을 '후속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 ③ 원고와 H은 2015. 7. 2. 후속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5억 490만 원 감액한 22억 8,910만 원으로 변경(이하 '1차 변경'이라고 한다)하였으나,
2015. 9. 11. 다시 1차 변경된 공사대금에서 8억 6,790만 원 증액한 31억 5,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변경은 물량증감, 설계변경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1차 변경에 따라 감액된 공사대금을 원고가 잔여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가 후속 도급계약에 따라 H에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최초 약정한 27억 9,4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⑥ 제1심 감정인 I는 '제1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공법변경에 따른 증액 부분, 즉 PC암거 삭제로 인하여 공법 변경되어 추가된
강관압입추진공사를 제외하고 제1도급계약의 해지 당시 제1공사 중 남아 있던 공사를 완료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3,326,025,578원으로 산정된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제1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제1공사의 잔여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적어도 최초 약정한 후속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27억 9,4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제1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27억 9,400만 원에서 C이 제1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C에
지급되었을 23억 7,160만 원(= 제1도급계약의 계약금액 29억 6,450만 원 - C과 정산된
기성공사대금 5억 9,290만 원)을 공제한 4억 2,240만 원(= 27억 9,400만 원 - 23억 7,16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4억 2,24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보증계약에 따라 101,097,000원(= 제1보증계약의
보증금액 2억 9,645만 원 -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보증금액 195,3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보증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 관계없이 피고는 제1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제1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 이상으로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나) 피고의 '보증금 액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제1도급계약의 원도급계약, 즉 원고와 한국환경공단이 'D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보증약관 제5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어 원고가 그 연차별 계약을 이행·완료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원고로서는 하수급인인 C이 이행·완료한 부분에 관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C에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 30.까지 위 원도급계약 중 1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와 같이 완료된 공사 중 C이 제1도급계약에 따라 이행·완료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²⁾은 4억 1,129만 원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는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액 중 C이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41,129,000원(= C의 기성공사대금 4억 1,129만 원 × 계약보증비율 10%)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한국환경공단이 'D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사실, 원고는 2013. 10. 30.부터 2014. 6. 30.까지 1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제1도급계약에 따라 2014. 6. 30.까지 이행·완료한 공사의 누적 기성고는 411,2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행·완료한 공사는 원고가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위 1차수 계약에 따라 이행·완료한 공사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보증약관 제5조는 제1항에서 '보증채권자와 발주자가 체결한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보증채권자가 연차별 계약을 이행·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라고, 제2항에서 '피고는 제1항에 의거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약관 조항의 해석상 '원고가 C에 C이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보증약관은 피고와 C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제1보증계약에 편입된 것이므로, 계약 법리상 보증약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로 하여금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이 분명한(따라서 보증약관 제5조는 '원고가 별도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이유로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도급계약서 제7조 제9항은 'C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고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C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공사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장기계속공사'의 의미를 '공사기간이 여러 년도에 걸쳐 있는 공사'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위 계약서 조항도 그 문언상 원고가 C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계약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상 또는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피고가 주장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은 원고와 한국환경공단 사이에 체결된 원도급계약에 적용되어 '한국환경공단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제1도급계약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발생 여부 가) 보증책임을 발생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4. 10. 29.경 제2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제2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취소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제2보증계약이 체결될 무렵, 제2도급계약은 C의 제2공사 지연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미 해지사유가 발생한 상태였고, 원고는 C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C과 원고는 제2보증계약 체결 당시 제2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이에 속아 착오에 빠져 제2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2. 16. C에, 2016. 2. 19. 원고에게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제2보증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C 및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제2보증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피고의 위 주장에는 그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뒤의 판단 부분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정리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조합원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것은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이 착오에 빠진 경우 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합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C은 제2도급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2014. 6.경 제2공사의 일부 공정을 지연하여 원고로부터 공기만회 요청을 받았던

사실, ② 원고는 2014. 7. 23. C과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한 후, 2014. 7. 24. C에 '공사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며, 위 회의에서 정한 일정을 준수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함과 아울러 '제2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C은 제2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9. 25. C에 'C이 토사반출공사를 지연하던 중 예고 없이 이를 중단하였으므로 토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공기만회계획을 원고에게 제출하고, 익일부터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 ④ C이 제2공사를 계속하여 지연하자, 원고는 2014. 10. 29. C에 '체불금액 누적 및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정지연과 중지 등에 따라 거둬진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C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및 특수조건 제6조에 의하여 제2도급계약 해지의 통지를 한 사실, 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4. 7. 15. 발령되어 제2보증계약 체결 전인 2014. 7.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9, 10,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내지 이유 등을 고려해 보면, 제2보증계약 체결 당시 있었던 C의 공사 지연이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발령 등을 비롯한 위 인정사실과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2보증계약 체결 당시 C이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였다거나 제2도급계약이 C의 제2공사 지연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해지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취소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먼저, 제2보증계약은 C과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이므로, 제2보증계약의 체결 과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망행위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C'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주장 중 '원고가 제2보증계약 당시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등의 언급 부분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C과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2보증계약 체결

전인 2014. 10. 15. 발령되어 2014. 7. 1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제2보증계약의 체결에 있어 기망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부분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C에 송달된 날은 제2보증계약 체결 당일인 2014. 7. 31.이므로, C이 제2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발령된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설령, C이 제2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발령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은 11,914,650원으로서 제2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 30억 8,550만 원과 비교하여 소액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제2보증계약 체결 전 보증심사를 위하여 C에 요구하였던 서류로는 '계약보증신청서', '납세증명서', '하도급계약서(제2도급계약서)', '내역서(제2공사 내역서)' 뿐이고, 위 서류들에 가압류 등의 집행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안내문은 없는 점, 보증약관 제9조에서 '보증채권자인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 등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C은 피고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인 원고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가압류결정이 발령된 경우에는 그 당연한 결과로 보증계약 체결이 거부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2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발령 사실을 알았다면 제2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발령된 사실을 C이 피고에게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③ C은 제2도급계약 체결 이후부터 제2보증계약 체결 전까지 제2공사의 일부 공정을 지연한 사실이 있으나, 제2도급계약 체결 직후인 2014. 5. 31. '천공장비 1호기'를 반입하는 등 제2공사에 착수한 이후 2014. 6. 28. 'C3 장비'를 반입하는 등 제2공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2보증계약 체결 전 C이 제2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기성금으로 2014. 6.경 1억 7,050만 원, 2014. 7.경 3억 8,500만 원이 각 발생하였고, 원고는 C의 직불요청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에 위 기성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C은 2014. 7. 23.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하는 회의를 가졌는데, 당시 그 대책 중의 하나로 '공사 지연 및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제2도급계약의 해지'가 논의되기도 하였음에도 원고가 제2도급계약의 해지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C의 공사수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이는 점(C이 2014. 7. 31. 제2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사정도 당시 C이 공사수행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대책회의 다음날인 2014. 7. 24. C에 '공사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며, 위 회의에서 정한 일정을 준수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함과 아울러 '제2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C은 제2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전날 있었던 회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지연 등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원고가 2014. 10. 29.경 제2도급계약을 해지한 결정적 이유는 '제2보증계약 체결 이후의 체불금액 누적과 주식회사 J의 신청에 따라 2014. 10. 15. 발령된 청구금액 136,344,370원의 후행 가압류결정'을 근거로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2보증계약 체결 당시 'C이 이미 제2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제2도급계약이 C의 제2공사 지연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해지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그리고 제2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8호는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때'를 해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보증계약은 위와 같은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지사유의 발생(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상태)을 C이 피고에 고지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보아 제2보증계약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원고로서는 제2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C이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제2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나, C이 제2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고 있음'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므로, 위 해지사유의 발생 여부를 C이 피고에게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⑤ 한편, 원고가 제2도급계약의 해지사유로 삼은 '제2보증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체불금액 누적 및 후행 채권가압류', C의 계속된 공사 지연 등의 사후적인 사정들만으로는 'C이 제2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제2공사를 수행할 만한 공사이행능력이나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과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발령, C의 일부 공정 지연 등 제2보증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C이 제2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하는 등으로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착오에 빠져 제2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보더라도, 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은 제2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C은 제2보증계약 체결 무렵 비록 일부 공정을 지연하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제2공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고, C의 공사수행 의지 역시 외부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4. 6.경 및 2014. 7.경 C의 직불요청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④ 제2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보증서(갑 제8호증의 1)에 기재된 제2도급계약에 관한 사항들(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이행기일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C이 제2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들 중 원고가 관여한 제2도급계약서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은 없었다), ⑤ 본질적으로 제2보증계약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C이 위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체결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원고가 개입하거나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⑥ 원고와 C이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C의 기망이나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제2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취소 항변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의 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2보증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제2도급계약은 이미 해제사유3)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증금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위 '피고의 취소 항변에 대한 판단'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할 당시 제2도급계약이 이미 해제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면책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보증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증금의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약관 제6조 제1항은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C과 제2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17억 6,000만 원으로 정산한 점, ② 제2도급계약 해지 무렵 제2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당초 제2도급계약상의 계약금액 30억 8,550만 원에서 2억 3,364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제2도급계약 해지 이후인 2014. 11. 5.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에 제2공사의 잔여공사(당초 제2도급계약상 약정된 공사 및 해지 이후 설계변경된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계약금액 12억 4,685만 원, 공사기간 2014. 11. 5.부터 2016. 6.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 도급계약을 '후속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진행하였고, 잔여공사 중 일부는 직영으로 시공하여 620,159,795원을 지출하였던 점, ③ 제1심 감정인 1는 '위 잔여공사를 완료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2,272,851,881원으로 산정된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제2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써 'C이 미시공한 부분'을 완료하기 위하여 1,633,369,795원(= 후속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12억 4,685만 원 + 원고의 직영공사 금액 620,159,795원 - 설계변경된 부분 2억 3,364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제2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1,633,369,795원에서 C이 제2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C에 지급되었을 13억 2,550만 원(= 제2도급계약의 계약금액 30억 8,550만 원 - C과 정산된 기성공사대금 17억 6,000만 원)을 공제한 307,869,795원(= 1,633,369,795원 - 13억 2,55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2보증계약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위 손해액 307,869,795원은 제2보증계약의 보증금액 3억 855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제2보증계약에 따라 307,869,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408,966,795원(=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101,097,000원 +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307,869,795원) 및 그 중 101,097,000원에 대하여는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일인 2015. 9. 2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307,869,795원에 대하여는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일인 2015. 12. 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31.부터 각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①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101,097,000원에 대해서는 그 보증금 청구일(2015. 9. 21.)의 다음날인 '2015. 9.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②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307,869,795원에 대해서는 역시 그 보증금 청구일(2015. 12. 1.)의 다음날인 '2015. 1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약관 제7조 제1항은 '피고는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4) 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제1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인용하는 원금은 제1심과 동일하나, 당심은 그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제1심보다 적게 인용하는 바이므로,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에 관하여도 피고가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볼 것이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대하여도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부과하기로 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30,495,454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당심에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인 위 130,495,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당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일부라도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취소될 부분(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인정하는 이유는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아 반소 또는 차후 별소를 제기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가지급물반환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인용되는 금액이 제1심판결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이 제1심판결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당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홍승구

판사조기열

1) 민법에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도급계약의 해소에 관한 법률관계를 '해지'가 아니라 '해제'로 규율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해소를 주로 '해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구별이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하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해지'라고 한다.

2) 피고는 '계약금액'이 아니라 '기성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해소를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해제'가 아니라 '해지'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것인데, 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피고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제사유'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해제사유'라고 설시하였다.

4) 정확히는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이 될 것이나, 기록상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보증금을 청구한 날'을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 보기로 한다.